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Q 매입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하여 자문 요청드립니다
 21년 2기 확정신고 후, 작성일자 2021.12.01/ 발급일자 2022. 3. 2 자로 마이너스 금액의 매입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21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별도의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2.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임)
 자문요청 드립니다.

A 기존에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수정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정상적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합계표금액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법인)에게 차량 매각시 문의 사항

당사의 관계법인에게 차량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차량을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매각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신설법인이라 잔존가액이 시가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Q 2) 시가로 매각해야 한다면, 차량의 시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1.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잔존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시가는 제3자간에 거래되는 거래가액이므로 중고차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설비에 대해 해외 이관시 회계처리 질의

A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자산-부채) - 자본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자본조정 중 부가
계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이렇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차감할 미실현이익 중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가감하는데, 이때 이연법인세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가감하
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기간 중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공급가액 안분 방법(면세)

Q

[사실관계]

1. 당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임
2. 정부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면세)
3. 반기별로 총공급가액(기부채납가액)을 계약기간인 360개월로 안분하여 계산서를 수취
하고 있음

A

4. 2021년 12월 22일 관리운영기간 연장 계약 체결(+15년, 공급가액 변동 없음)

[질의사항]

연장합의된 기간은 총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안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말 잔여 총공급가액(21년말 총공급가액 - 21년말 기발행공급가액 누계)을 2022년
부터 연장된 기간까지 월할 안분하여 2022년 상반기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Q

공급가액의 변경없이 공급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2022년 상반기부터
연장된 기간까지 월할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계산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A